파주시 고시 제2018-157호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2008. 9. 22.)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된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24.

파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명 칭: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 ○ 면 적: 54,03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시행자: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75-1, 2층(금촌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8. 7. 2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용도
54,033.3	155,370.06	19.86	283.32	86.10 (지하2층~지상30층)	공동주택(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공 급 면 적			세대수	비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조합 (임대)	39형	39.89	21.17	61.06	61	5.03
	소 계	2,433.16	1,291.66	3,724.82	61	5.03
조합 (분양)	59A형	59.87	21.85	81.72	132	10.89
	59B형	59.90	22.50	82.40	50	4.12
	74형	74.84	21.23	96.07	50	4.12

	84형	84.83	23.69	108.52	50	4.12
	소 계	18,881.38	6,254.73	25,136.10	282	23.25
공공지원 민간임대	39형	39.89	21.17	61.06	124	10.22
	59A형	59.87	21.85	81.72	112	9.23
	59B형	59.90	22.50	82.40	168	13.85
	74형	74.84	21.23	96.07	238	19.62
	84형	84.83	23.69	108.52	228	18.80
	소 계	58,869.19	19,305.57	78,174.76	870	71.72
총 계		80,183.73	26,851.95	107,035.68	1,213	100.00

9.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 류	규 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4,958.9㎡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775.3㎡		
문화공원	2,185.5㎡		
녹 지	2,213.1㎡		
주차장	1,322.3㎡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

11.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등 관계 도서는 파주시청 주택과 도시정비팀(☎031-940-4775) 및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1-946-392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